

2025년도 제2차 기간제근로자 및 제1차 공무원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검찰청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시설관리사, 전기분야) 및 공무원근로자(시설관리사, 기계분야)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검찰총장

1. 채용예정 직위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근로계약기간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사, 전기)	1명	계약일로부터 2026. 1. 31.까지	청사 시설 관리 등 *변전실 관리, 전기설비 유지 및 보수 등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서울 송파구)
공무원근로자 (시설관리사, 기계)	1명	계약일로부터 무기계약 (만60세 정년)	청사 시설 관리 등 *냉난방 운용 관리, 위생 설비 시설 관리, 자동제어 운용관리 등	대검찰청(서울 서초구) 또는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서울 송파구)

※ 하나의 분야만 지원 가능(복수 중복 지원 불가)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휴직한 시설관리사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채용이며, 휴직자 조기 복직시 복직일 전일까지 근무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찰청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검찰청 공무원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23조(채용결격사유)】

-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대검찰청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대검찰청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9조(채용결격 사유)】

- 근로자의 채용결격 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 대검찰청 공무원 등 관리지침 제43조 정년(만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채용예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① 전기 (기간제)	자격증	①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직무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직무관련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관련 분야	*변전실 관리, 전기설비 유지 및 보수 등
② 기계 (공무직)	자격증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능사 이상: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 예) 자격증①√ / 자격증② → 요건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본인이 선택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적격 처리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비전임 및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경력 산정을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 명기**(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휴직기간 제외)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주 근무시간'의 개념은 초과·연장·휴무근무 등을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 근무시간을 의미함
- 원서접수 시 제출하는 경력(재직)증명서 외에,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장에서 경력 검증자료 제출절차 있음(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과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1부)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3. 서류전형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 응시자격요건 외 기능사 이상 관련분야 자격증
- 저소득층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

[우대요건 고려사항]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
- 우대요건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우대요건]

○ **경력**(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 관련분야: (전기) 변전실 관리, 전기설비 유지 및 보수 등

(기계) 냉·난방 운용관리, 위생설비 시설관리, 자동제어 운용관리 등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경력의 범위 참고

○ **직무관련 자격증**(응시자격요건 외, 건별·등급별 차등 우대)

- **시설관리사(전기)**: 전기, 건축전기설비, 소방설비(전기), 발송배전, 전기공사, 전기응용 기능사 이상 자격증

- **시설관리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 동일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 개 제출하는 경우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 저소득층

- 다음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단,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합산하여(중간 공백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

- 장애인증명서 및 복지카드 등 제출

4. 시험일정

채용분야	공고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시설관리사	'25. 1. 24.(금) ~ 2. 5.(수)	'25. 2. 20.(목)	'25. 2. 25.(화)	'25. 3. 5.(수)

- 면접전형 장소는 대검찰청(서울 서초구)이므로 응시에 참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검찰청 홈페이지 알림(고시·공고)란에 게재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 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시설관리사(전기)]**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소극적 전형을 실시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으로 합격자 결정 / 6명 이상인 경우 적극적 전형 실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5명 선발
- **[시설관리사(기계)]**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소극적 전형을 실시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으로 합격자 결정 / 6명 이상인 경우 적극적 전형 실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5명 선발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평정요소 】

- | | | |
|---------|-----------|----------------|
| ① 자기소개서 | ② 직무수행계획서 | ③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
| ④ 근무경력 | ⑤ 우대사항 |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④ 윤리·책임: 업무에 임하는 윤리의식과 책임성
- ⑤ 직무전문성: 해당 분야의 업무 수행 전문성

【 평가방식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합격자 순위결정 기준】

- ㉠ 평정요소 항목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불합격 기준】

-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의 평정
- ㉡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의 평정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1. 31.(금) ~ 2025. 2. 5.(수)
- 접수처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 (0659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서초동)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
- 접수방법
- 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등기우편 제출(직접방문, 택배 또는 인터넷 제출 불가)**
- ※ 서류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시설관리사(전기) 또는 시설관리사(기계) 응시원서 재증'** 표기
- ※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번호는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음), '25. 2. 10. (월)까지 응시번호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문의(☎ 02-3480-2037)

7. 근무조건

- 임용 예정일: 2025. 3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월 보수액 : 약 200만원 상당(연차에 따른 차등 지급, 수당 별도)
- 근무형태 : 주5일(40시간), 주야간 교대근무(단, 세부사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함)
-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위험 수당, 가족 수당, 명절 휴가비 지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8.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별지 제8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최종학교 졸업(재학, 휴학, 재적, 졸업예정) 증명서 사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재학, 휴학, 재적,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는 전형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 등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별지 제6호 서식 참고)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저소득층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차상위계층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지원기간 명시) 1부
- 장애인 증빙서류 사본 각 1부(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이 무효·취소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기타 문의사항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02-3480-2037, 채용 담당)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참여민원 -신고센터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별지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분야	시설관리사(전기) / 시설관리사(기계)	성명	
------	--------------------------	----	--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O / X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필수) *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1부(필수) *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1부(필수) * 별지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 1부(필수) * 별지 제4호 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 별지 제5호 서식	
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필수) * 별지 제7호 서식	
7.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필수) * 별지 제8호 서식	
8.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9. 최종학교 졸업(재학, 휴학, 재적, 졸업예정) 증명서 사본 1부(필수)	
10. (해당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별지 제6호 서식 참고	
11. (해당자)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12. (해당자)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	
13. (해당자) 장애인 증빙서류 1부	

* 작성 또는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O/X란에 표시

☞ 위 순서대로 제출(제본이나 편철하지 말고 서류 전체를 집게로 집어 제출)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양면 인쇄 금지, 개별 서류 별로 클립 또는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2025. . .

성명 : (서명)

검찰총장 귀하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시설관리사(전기) 또는 시설관리사(기계) 선택
※ 하나의 지원코드만 지원 가능(복수 코드 중복 지원 불가)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예” 또는 “아니오” 중 해당되는 괄호 안에 “○” 표시

◎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가 아니거나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증, 공고문의 제출서류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서류는 제출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에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서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별지 제2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대검찰청 2025년도 제2차 기간제근로자(시설관리사, 전기) 및 제1차 공무원직 근로자(시설관리사, 기계)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검찰총장 귀하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시설관리사(전기) / 시설관리사(기계)		(한자)
주민등록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예(), 아니오()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시설관리사(전기) / 시설관리사(기계)
성명	(한글)	(한자)	
2025년 월 일 검찰총장 印			

주 의 사 항

- 응시번호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응시표는 송부하지 않습니다.
- 면접당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4호>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2025. . . 작 성 자 : (서명)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

2025. . . 작성자 : (서명)

<별지 제6호>

경력(재직) 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① 담당업무	② 근무형태 (주근무시간)	③ 비고																
	부터	까지																					
	(예시) '12.6.30	'23.7.1	대검찰청	시설 관리사	냉난방 운용관리 등	전임 주 40시간																	
제외 기간	제외기간			제외사유																			
	(예시) `21.6.30. ~ `21.12.31.			(예시) 육아휴직 등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5 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④ 발급자</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속</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위</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인)</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⑤ 확인자</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속</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위</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인)</td> </tr> </table>				④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⑤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④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⑤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근무형태 : 주 근무시간 기재 ③ 비고 : 기타 참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④ 발급자 : 발급 업무 담당자 직접 기재 (발급신청자×) ⑤ 확인자 : 인사 부서 담당자 직접 기재 (발급자의 직속상급자 혹은 소속부서 팀장 및 과장 등)																							

<별지 제7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검찰청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 ·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 ·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대검찰청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근로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검찰총장 귀하

<별지 제8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p>1. <u>공직자로 재직</u>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2. '<u>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u>'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u>된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서명)